

군산시 공고 제2020-1439호

공 고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 조항 수정 및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관리자의 임명, 관리자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변경 및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개정하여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의 띄어쓰기를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표기
 -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 다른 법령의 제명을 인용할 때 낫표(「」)사용
 -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수정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 조항, 조 제목 등 개정
(안 제1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 목적
 - 제11조(일반회계 부담) ⇒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 제12조(출자) ⇒ 출자 등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이익의 처리

- 시장의 고유권한 제한,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안 제2조, 제4조2항,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기타→그 밖의 다음년도→다음연도 사업년도→사업연도
 - 회계년도→회계연도 행하는→하는 각호→각 호
 - 비상 재해→비상재해 대 확장사업→대확장 사업
 - 수도사업 특별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지역 개발→지역개발
 - 회계처리상황의→회계처리 상황의 회전 기금→회전기금

3.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21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수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층 수도과

2) 팩스 : 063-452-8177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수도과(전화 : 063-454-53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군산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삭제〉
4. 〈삭제〉

제3조(급수구역) 〈삭제〉

제4조(관리자의 지정)

- ① 수도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 ② 〈삭제〉

제5조(조직) 〈삭제〉

제6조(인사) 〈삭제〉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 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군산시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 규정) <삭제>

제16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법 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4. <삭제 2015.12.15.>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삭제>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업무상황 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 8월 31일까지 제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u></p> <p>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u>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u>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u>운영 및 조직에 관한</u>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 함은 <u>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상수도업 및 그의 부대되는 사업</u> 2. <u>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의 부대되는 사업</u> 3. <u>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u> 4. <u>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u> <p>제3조(급수의 구역) <u>군산시 수도</u></p>	<p><u>군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지방공기업법</u>」 제5조----- ----- - <u>운영의</u> ----- -----.</p> <p>제2조(사업의 범위) <u>군산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상수도사업 및 그에</u> ----- - 2. ----- <u>그에</u> ----- ----- 3. <u><삭제></u> 4. <u><삭제></u> <p>제3조(급수구역) <u><삭제></u></p>

사업의 급수구역은 군산시 행정 구역내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 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삭제〉

제5조(조직) 〈삭제〉

제6조(인사) 〈삭제〉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

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산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 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

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
----- 따라 -----
-----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군산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연도 ----- 회계연도-----

제11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급수공급에서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군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 1. 창업시
- 2.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 3. 단기 집중적 대 확장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

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2조(출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 1. 창업을 하는 경우
- 2. 지역개발-----
----- 하는 -----
- 3. -----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가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전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으로 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
-----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

제13조(재정지원) --- 각 호-----
-----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1. 비상재해 -----

2. 제11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명의로 발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 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

행한다.-----

---- 특별회계로 -----
-----.

② ----- 지방채에-----

-----.

제15조(예산의 탄력 규정)

<삭제>

제16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법 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 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잉여금에서 전 1, 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②항, 제③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 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 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자치단체의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적립

2. -----
-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제1호 및 제2호-----

-----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
-----.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삭제>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 시장-----
----- 시산표 및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 3. 예산집행보고서
- 4. (생략)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의 현황

-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의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

- 1. (현행과 같음)
-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 3. 예산집행 보고서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업무상황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 8월 31일까지 제출
-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3. <삭제>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삭제>

군산시 고시 제 2020 - 112 호

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나포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0년 7월 일

1. 사업명칭 : 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목적 : 농촌 중심지의 경쟁력을 살려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향상 및 소재지 경관개선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 도모
3. 사업내용
 -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나리터센터 및 광장, 나리터 창의키움 공작소 조성
 - 나. 지역경관개선 : 스쿨로드 조성
 - 다. 지역역량강화 :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경영지원 등
4. 사업위치 : 군산시 나포면 옥곶리 일원
5. 사 업 비 : 3,990백만원(국비 2,793 도비 359.1 시비 837.9)
6.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년)
7. 사업효과 : 면 소재지 중심기능 및 복지기능 강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 조성으로 주민교류 활성화 및 공동체 형성, 가로경관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농촌발전 거점 육성
8.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9. 위탁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10.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해당없음

※ 기본계획 열람장소 : 군산시 건설과(063-454-3602),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440-5723)